² 지원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기업의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②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별첨9]
 -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2-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❷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 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4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장이 고시)
 -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 (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를 통해 확인 가능
- ⑥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 급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3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 · 용역 근로자 등을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2-4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5 「산업안전보건법」제1O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2-6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2-7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2-8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단,「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2-9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②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③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2-10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별첨 9

지원제외 업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구분	내용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 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청소년 유해업소	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 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 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한국마사회법」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경륜・경정법」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구분	내용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풍속영업	4.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 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행행위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구분	내용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투전기"란 동전·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